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1.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포일 : 2021.8.11, 공포일로 부터 시행함)

○ 주요내용

- 진료행위 참여 등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을 '의료기관 세탁물' 범위에 명시하여 개별적 세탁을 금지함(안 제2조)
- '세탁금지 세탁물' 대상 감염병 중 '바이러스성 출혈열' 분류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내용에 따라 현행화(안 제5조)
-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감염 예방 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8조)
- 세탁물의 보관, 소독일지 신설 등 운반기준 합리적 개선 (별표1, 별표4) 등

붙임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령 제822호)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장), 부산광역시(보건위생과장), 대구광역시(보건의료정책과장), 인천광역시(보건의료정책과장), 광주광역시(건강정책과장), 대전광역시(감염병관리과장), 울산광역시(식품의약품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보건정책과장), 경기도지사(보건의료과장), 강원도지사(보건위생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장), 전라남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홍보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인사과장, 기획조정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질병정책과장, 한의약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지역복지과장,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인구정책총괄과장, 노인정책과장, 장애인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국민연금정책과장, 사회보장총괄과장,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정신건강정책과장,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부곡병원장, 국립춘천병원장, 국립공주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재활원장,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장,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주무관 **염은정** 보건사무관 **이승열** 의료기관정책과장 **오창현** 2021. 8. 11.

협조자

시행 의료기관정책과-4888 (2021. 8. 11.)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10동 4층 보건복지부 의료기
관정책과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475 팩스번호 044-202-3926 / duadmswjd100@korea.kr / 대한민국 공개